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축물의 화재 안전 기준 강화 》

■ 염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53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열태영의원 대표발의(제221525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3
가.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의무화 (안 제50조제3항)	3
나. 지하주차장의 단열재 및 필로티 구조의 천장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등의 불연성능 의무화(안 제52조제5항 및 제6항)	6
다. 내화채움구조의 기준·설계 등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62조)	10
라. 부칙	13

I. 염태영의원 대표발의(제2215253호)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염태영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12. 15.
3. 회 부 일 : 2025. 12. 16.

2.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경우에도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내부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에는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장 및 창고시설은 인근에 공장 및 창고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공장 및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력 도달 이전에 불꽃이나 불티에 의하여 화재가 인근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적 구분없이 모든 공장과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지하층의 주차장,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 필로티 구조의

천장 및 지하층에 설치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의 불연재료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

2021년 구광 덕평물류센터 화재, 2024년 8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2025년 4월 부산 반얀트리 화재, 2025년 7월 광명 필로티구조 아파트 화재등의 경우와 같이 지하주차장, 필로티 구조의 화재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음.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도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내화채움구조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 등으로 다원화 되어 관리감독 체계의 사각지대가 많아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 나. 건축물 지하층의 주차장 내·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및 단열재, 필로티 구조의 천장·지하층에 설치하는 배관 및 배관설비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하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및 제6항).
- 다. 내화채움구조는 건축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으로 나누어져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시함(안 제62조).

4. 검토의견

가.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의무화

(안 제5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 ② (생략) <u><신설></u>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공장 및 창고시설은 화재발생 시 불꽃 또는 불티의 비산에 의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u>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화재발생 시 불꽃 또는 불티의 비산¹⁾에 의한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耐火構造)²⁾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법령³⁾에 따라 공장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

1) ‘불티의 비산’은 타는 불에서 튀는 작은 불똥이 날아서 흩어지는 것을 의미함.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하 생략)

3)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

창고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있음(참고자료 1 참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장 및 창고시설은 인근에 유사한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화재발생 시 소방력이 도달하기 전에 불꽃이나 불티에 의해 화재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음.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타 시설에 비해 공장 및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의 재산피해가 월등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발화장소·지점별 화재통계 】

구분	화재건수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만원)	
		사망	부상	총계	건당	총계
단독주택	26,009	587	2,108	2,695	798	20,758,376
공동주택	23,755	333	2,644	2,977	641	15,218,618
일반업무	5,395	20	216	236	603	3,251,469
숙박시설	1,880	47	324	371	1,226	2,305,613
공장시설	10,915	61	851	912	16,458	179,637,634
창고시설	6,590	24	252	276	21,111	139,123,424

※ 자료: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1. (생략)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개정안은 면적의 구분 없이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소규모 공장 및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의 확산을 지연시켜 대피 시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으로 판단됨.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내화구조의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모든 공장 및 창고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의무화할 경우 사실상 지붕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공장 및 창고의 외벽 마감재료와 복합자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로 보일 수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최근까지도 공장 및 창고 등에서 화재가 발생⁴⁾하여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공장 및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순기능적인 측면과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김포·인천·칠곡·천안 화재 사고…피해 속출(bnt뉴스, 2025. 11. 17.)

- 경기 김포 플라스틱 공장,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경북 칠곡 물류창고 등 전국 각지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15일 충남 천안에서 시작된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역시 이틀째 계속되면서 완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 사망 등 대규모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일부 부상자가 발생하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하 생략)

나. 지하주차장의 단열재 및 필로티 구조의 천장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등의 불연성능 의무화(안 제52조제5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지하층의 주차장 내·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u> ⑥ <u>필로티 구조의 천장 및 지하층에 설치하는 배관 및 배관설비에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u>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① 건축물 지하층의 주차장 내·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② 필로티 구조의 천장에 사용하는 단열재, ③ 지하층에 설치하는 배관과 배관설비에 사용하는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 】

구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정의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성능	700℃에서 20분 이상 불에 타지 않음	700℃에서 10분 이상 불에 타지 않음	700℃에서 5분 이상 불에 타지 않음
시험법	KS F ISO 1182	KS F ISO 5660-1	KS F ISO 5660-1

※ 자료: 국토교통부

현행법은 ② 필로티 구조의 천장에 설치하는 단열재의 경우에만 준불연성능 이상인 재료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① 건축물의 지하층의 주차장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③ 지하층에 설치하는 배관과 배관설비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개정안과 관련된 현행 규정 】

구분	내용	관련 규정
지하주차장의 내·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	별도의 규정 없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내부 마감재료 난연성능을 가진 재료로 설치하도록 개정중)
필로티 구조의 천장에 사용하는 단열재	준불연성능 이상인 재료로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지하층에 설치하는 배관과 배관설비에 사용하는 단열재	별도의 규정 없음 ※ 관련 연구개발 진행중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배관에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등에서 난연재료 성능 이상으로 규정

※ 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2024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⁵⁾, 2025년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하주차장 및 필로티 구조의 마감재료와 단열재 등을 불연재료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가 어려운 구조물에서의 화재확산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으로 판단됨.

5) 주차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인해 차량 880대가 전소됨.

안 제52조제6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 제52조6)의 타 조항을 참고하여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필로티 구조의 천장 및 지하층에 설치하는 배관 및 배관설비”에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필로티 구조의 천장에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와 지하층에 설치하는 배관 및 배관설비에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로티 구조의 천장 및 지하층에 설치하는 배관과 배관설비”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단열재 및 마감재료에 대한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고⁷⁾, 현재

6)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유통되는 배관 보온재의 대부분은 난연성능을 갖추지 못한 제품이 많아 성능 기준을 갖춘 재료의 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의견 등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를 난연재료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중

8) 화재 안전 강화 명분 속 규제 논쟁...건축법 개정안 도마 위(The Public, 2026. 1. 27.)

- 무기질 불연 단열재는 단열 성능이 낮아 동일한 성능 확보를 위해 두께 증가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시공성과 안전성, 공사비 부담이 모두 상승할 수 있다는 등의 반대의견이 있음.

다. 내화채움구조의 기준·설계 등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62조)

현행	개정안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건축설비기준 및 내화채움구조 등) 건축설비 및 내화채움구조의----- -----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내화채움구조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내화채움구조란 외벽 또는 바닥으로 배전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틈이 생긴 경우, 틈새를 통한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틈을 메우는 구조를 뜻함.

【 내화채움구조 (예시) 】



※ 자료: 국토교통부

내화채움구조의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⁹⁾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감리에 대해서는 「건축법」, 소방감리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¹⁰⁾에서 적합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과 관련된 현행 규정 】

구분	내용	관련 규정
내화채움구조	내화채움구조 설치기준 등	「건축법」,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등
건축감리	내화채움구조 등 방화구획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확인	「건축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등
소방감리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 자료: 국토교통부

9)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②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하여야 한다.

1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의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이하 생략)

내화채움구조는 배관 관통 부위에 설치하는 특성상 소방설비의 배관이나 전기 케이블이 관통하는 부위에 시공해야 하므로, 관련 설비 공사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방화구획’의 감리는 「건축법」,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감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감리·소방감리에서 모두 확인해야 하나, 각 감리별 감리기준, 대상, 확인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개정안은 건축설비·소방설비 등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내화채움구조에 대한 기준 및 설계, 공사감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전반적인 화재 안전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안 제62조 제목(건축설비기준 등)을 “건축설비기준 및 내화채움구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문의 표현 방식과 동일하게 “건축설비 및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내화채움구조의 설계·감리의 기준은 현행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라. 부칙

개 정 안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주차장, 펄로티 구조의 천장 등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에는 시행일 외에 별도의 부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부칙을 두지 않는 경우,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 외에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제50조제3항, 제52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법제처 역시 동일한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85

참고 1

내화구조 등 관련 규정 요약 (자료: 국토교통부)

□ 현행 건축법령

- **(지붕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로서 지붕을 형성하고, 지붕 하중을 기둥으로 전달하는 구조부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등

- **(지붕)** 주요구조부인 지붕틀과 지붕틀 위에 설치되는 마감재료
 - 복합 구성 재료(합판, 단열재, 방수재, 외장/기와 등)
 - 단일 재료(샌드위치 판넬과 같은 복합 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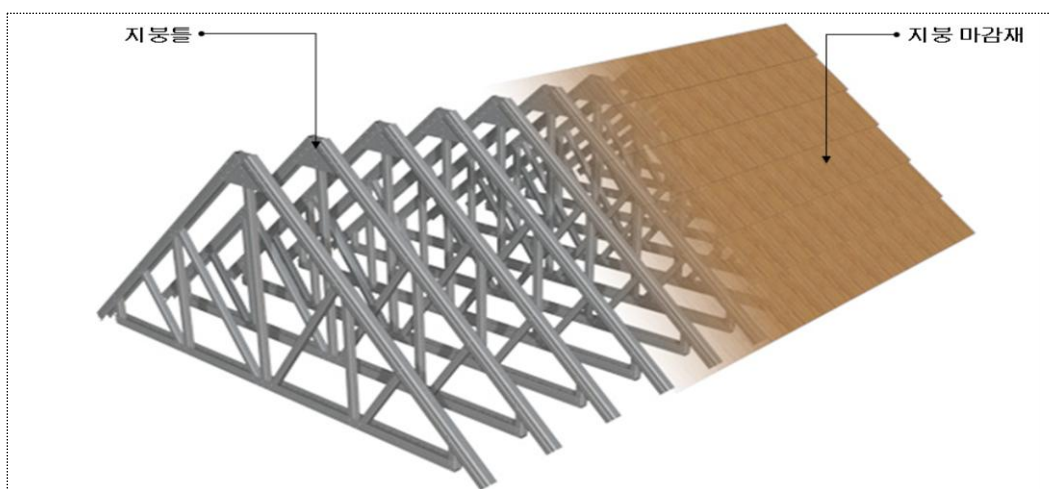
- **(내화구조 등)** 건축법령 상 화재 시 피해방지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지붕틀 등)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건축법 제50조 및 제52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지붕)

- ①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재보강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유리블록조, 망입유리구조 ② 건설기술연구원에 30분 내화성능을 인정받은 구조

** 불연재료(기와, 시멘트판 등), 준불연재료(석고보드 등), 난연재료(난연 합판 등)

※ 지붕틀과 지붕 도해



□ 내화 관련 용어 비교

- 「건축법」 제2조제7호(주요구조부)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불연재료 등)

구 분		내 용
주요구조부		건축물의 골격을 형성하는 기둥·보·내력벽·지붕틀 등을 말함
구조측면 (구조재)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 화재 시 건축물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함 -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과 같은 구조재를 주로 대상으로 함
재료측면 (마감재) KS F 2271	불연재료 (난연 1급)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콘크리트, 벽돌, 유리 등을 말함
	준불연재료 (난연 2급)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석고보드, 미네랄 텍스 등을 말함
	난연재료 (난연 3급)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등을 말함

참고 2

배관보온재 관련 규제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 '15년부터 소방법령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건축법상 규제는 없음
 - 건축법상 규제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 착수('25~'29)

□ 소방법상 규제 현황

- (대상) 스프링클러, 옥내·옥외소화전 등 소화설비
- (성능) 난연성능 이상
 - 최근 난연성능 시험기준* 건축법상 기준으로 강화('25.12)
 - * 산소지수, 수평연소성 시험 → 콘칼로리미터, 가스유해성 시험으로 기준 변경
콘칼로리미터, 가스유해성 시험은 화재안전 측면에서 더 강화된 기준

□ 규제 개선 추진현황

- 청라 전기차 화재 후속으로 배관보온재 화재확산 방지구조 개발중
 - *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개발('25~'29)
 - 배관 보온재 사용 현황, 시험방법, 화재확산방지구조 개발하여 필요시 규제 개선(~'29년)
- (화재확산방지구조) 배관보온재 중간에 불연재료로된 띠를 만들어, 보온재를 타고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

